

'04. 12. 20

심사보고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 경과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12월 7일
 - 회부일자 : 2004년 12월 8일
- 상정일자 :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4. 12. 15 :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 제안 이유
 - 도세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의 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과 조례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일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명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정비 (안 제2조제2항, 제3항)
 - 광주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중 장애인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면제토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 (안 제3조제1항)
- 종전에는 평생교육시설용(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였으나 등록이전에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 한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안 제8조)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및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조항 신설 (안 제16조제2항)
- 종전에는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 에게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안 제17조제2호)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상만)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명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등으로 일부 조문을 문맥에 맞게 정리하는 내용과
-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및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을 추가하고,
- 종전에는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 면제를 하였으나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자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하며
-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현행 조문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 되어 있어 등록후에는 현실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음으로 이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중 장애인 배우자는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면제토록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 다만, 도세 감면대상을 추가 또는 확대함으로써 세수감소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동 조례 개정시에는 반드시 세수증감에 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8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도세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의 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과 조례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일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제2항, 제3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광주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 등

나.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중 장애인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면제토록 범위 명확히 규정 (안 제3조제1항)

다. 종전에는 평생교육시설용(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였으나 “등록이전에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 한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안 제8조)

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및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조항 신설 (안 제16조제2항)

마. 종전에는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 에게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안 제17조제2호)

의안전문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 : 붙임

기타 참고자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8조제1호중 “인가·등록·신고된”을 “인가·등록·신고하는”으로, 동조제5호중 “의하여 등록된”을 “의한”으로, 동조제6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동조제7호중 “의하여 등록된”을 “의한”으로 각각 한다.

제16조중 “제16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를 “제16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 현대화 및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구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공자등에우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에우뒀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③ 국가유공자등에우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③-----, 5·18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현 행	개 정
<p>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후단생략)</p> <p>다만,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후단생략)</p>	<p>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p> <p>-----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p> <p>-----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p> <p>----- (현행과같음)</p>
<p>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p>	<p>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p> <p>-----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p>

현 행	개 정
<p>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후단생략)</p>	<p>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 ----- ----- -----하여 (현행과같음)</p>
<p>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후단생략)</p>	<p>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 ----- -----</p>
<p>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4(생략)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p>	<p>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4(현행과 같음)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법률 제7105호, 2004.1.20)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로 한다.

제1조의 부분중 “광주민주화운동” 을 “5·18민주화운동” 으로 한다

제4조각호의 부분중 “광주민주유공자” 을 “5·18민주유공자” 로 한다.

제4종의 부분중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을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로 한다.

제4조제2호의 부분중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로 한다.

제4조제3호의 부분중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을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로 한다.

제68조제목중 “광주민주유공자지원단체조직” 을 “5·18민주유공자지원단체조직” 으로 한다.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협동화” 라 함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 생산설비·연구 개발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다. 제품·상표의 개발, 원자재 구입·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제1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